

# 양계업자의 소득세 신고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양계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서 세무신고 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세무신고 업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1. 사업장현황신고

양계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신고절차를 위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1년간의 매출액을 산출해 신고하는 업무이며, 신고할 매출액은 다투어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를 집계하고 이에 발행하지 않은 매출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신고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발생해 준 계산서 중 일부가 누락되어 신고 후에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거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은 바, 신고 후에도 누락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하고, 만약 누락된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신고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전년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의 양계업자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과세된다.

## 2. 소득세신고

양계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양계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득이 있든, 적자가 발생하든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합산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은 금융기관 등의 이자소득 및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4,0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반면 부부 또는 같은 세대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를 추계 결정해 과세하며 이에 매출액의 1만분의 7과 소득세액의 20%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함께 과세된다,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양계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과세한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매출, 매입 자료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회회사 등에서 받은 장려금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축분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의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타 소득(임대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 농가부업소득비과세 등 각종 세액감면사항을 적용받도록 한다.

###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신고한 사항 중에 누락되었거나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정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세액감면사항 등을 반영하지 아니해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3년 내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소득세를 2008년 5월 31일 전에 신고한 후에 농가부업소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201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며, 환급받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차상당액(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도 받을 수 있다.

### 4. 소득세의 납부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45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일변3전(연리 10.9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5. 중간예납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법정 신고기간 동안에 세액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국가재정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중간예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하고, 동 금액을 5월 31일 확정신고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 6.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세(줄여서 “갑근세”라 함)를 공제하고 지급한 후에 공제한 갑근세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년 말에 1년간 지급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 7. 주민세

소득세에 대해 10%의 주민세가 부가되는데, 소득세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세이기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다. 

■ 문의 : (02)552-6100 대한회계법인